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 12. 18. -----최광렬의원의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3.12.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재근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사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기준 개정(안 제10조)
 -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1일 50,0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료 7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인상의 원인이 제기 되었으나 규칙에 수당 지급액을 명시함으로써 지침변동에 따른 규칙개정 등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개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 개정안은 2004년 예산편성지침의 민간인 회의 참석수당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상향 조정함에 있어 지급액을 정액으로 명시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시마다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개선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